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12. 18.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발의일자 : 2008년 11월 18일

나. 발 의 자 : 송수희 의원 외 7인

다. 회부일자 : 2008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2008년 12월 4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 설명자 : 송수희 의원)

가. 제 정 이 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의 목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재원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활용 수익금,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보조금으로 함(안 제2조)

○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등으로 한정함(안 제3조)

○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며, 통합관

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음(안 제4조)

○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5조)

○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2007. 12. 21)됨에 따라 같은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하며,

○ 안 제4조에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조성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183

발의년월일 : 2008년 11월 일
발 의 자 : 송수희 의원외 인

1. 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의 목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활용 수익금,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보조금으로 함(안제2조)

나.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등으로 한정함(안제3조)

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음(안제4조)

라.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제5조)

마.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안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 협의

다.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 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디자인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기획홍보과장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4.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2.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의 변경
3.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디자인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광고물디자인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